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4. 12. .

발 의 자 : 정청래 의원

찬 성 자 :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법원의 허가나 영장없이도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이 담긴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정보주체인 가입자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통신자료를 취득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의 문제가 있음.

또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 또는 위탁받거나 협조한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압수·수색 등의 집행 현황에 대한 통계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신자료의 제공에 대해서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강화하고, 통신제한조치 등의 집행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83조 등).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 2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제3항, 제13조 제5항의 대장
2. 「형사소송법」 제106조 및 제109조에 따라 집행된 압수·수색 현황을 기재한 대장

제94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104조제5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한다.

13의2. 제83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 등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위탁·협조요청을 받거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② (생략)</p> <p>③ <u>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이용자의 성명</u> 2. <u>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u> 3. <u>이용자의 주소</u> 4. <u>이용자의 전화번호</u> 5. <u>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u> 	<p>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
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
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
일

④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
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
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
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
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
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
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
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
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
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과
제4항의 절차에 따라 통신자료
제공을 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
자료제공 사실 등 필요한 사항
을 기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
다.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

<삭 제>

<삭 제>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신
자료제공을 한 현황 등을 연 2
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고
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제5항
에 따른 관련 자료의 관리 상
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한
다. 다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

호의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 2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
고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
보에 관하여는 공개하지 아
니할 수 있다.

1.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제3항, 제13조 제5항의 대장
2. 「형사소송법」 제106조 및
제109조에 따라 집행된 압
수·수색 현황을 기재한 대장
<삭 제>

한 자가 법원인 경우에는 법원 행정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생략)

⑨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5. 제8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자료제공을 한 자 및 그 제공을 받은 자

제104조(과태료)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3. (생략)

<신설>

14. 제83조제7항을 위반하여 중

⑧ (현행과 같음)

<삭제>

제94조(벌칙) -----

-----.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제104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13. (현행과 같음)

13의2. 제83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 등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자

<삭제>

양행정기관의 장애인에게 통신자료제공 사실 등이 기재된 대장의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15. ~ 17. (생략)

⑥ (생략)

15. ~ 17.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